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39호 2024. 7. 19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2024-1385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 공고 제2024-1385호

「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5일

남 원 시 장

**『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』
일부개정조례안****1. 개정이유**

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참여를 확대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 책무 규정 (안 제4조)
- 나.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(안 제11조)
- 다. 시민위원회 구성 규정 (안 제12조)
- 라. 재정 및 실무지원 규정(안 제20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7. 16. ~ 2024. 8. 5. (20일간)**4. 의견제출**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기획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- 우편번호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기획실

다. 의견 제출 방법

- 서면, 이메일(seul6633@korea.kr), fax(063-620-6702) 및 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(☎063-620-6019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「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.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: 기 획 실 장

1. 개정이유

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 책무 규정 (안 제4조)
- 나.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(안 제11조)
- 다. 시민위원회 구성 규정 (안 제12조)
- 라. 재정 및 실무지원 규정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24. 7. 16. ~ 2024. 8. 5. (20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 - 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 - 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 - 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”을 “예산편성·집행·결산 등 예산의 전반과정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수행한다”를 “수행 할 수 있다”로 한다. 또한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업 우선순위 선정(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)

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, 여성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.

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장 책무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예산편성 등 예산과정</u>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장 책무) ----- ----- <u>예산편성 · 집행 · 결산 등 예산의 전반과정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 5. (생략)</p>	<p>제11조(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<u>수행</u> 할 수 있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사업 우선순위 선정(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)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<p>제12조(시민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(시민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, 여성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0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0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</u></p>

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한 개인
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남원시
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
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
있다.

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 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 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.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붙임

관련 법령

■ 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 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18. 3. 27., 2021. 1. 12.>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“주민참여예산기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7.>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8. 3. 27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3., 2017. 7. 26., 2018. 3. 27.>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7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[제목개정 2018. 3. 27.]

■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3. 3.>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 2. 설문조사
 3. 사업공모
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.>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.>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 2.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 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3.>